

의안번호	2126331
의 퇴 인	전혜숙의원
회 답 일	2024.2.13.
추계번호	24C008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건강증진 및 <u>안전</u>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의 목적에 ‘안전’을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7의2. 요양기관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안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요양기관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기존 사업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3억 5,600만원(2022년)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제3차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요양기관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상세 사유

□ 건강보험의 목적(안 제1조)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안전’을 포함하고 안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재정에서 안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²⁾,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보험급여의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책임을 확대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 현행법은 제4장(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제41조), 선별급여(제41조의4), 방문요양급여(제41조의5), 요양비(제49조), 부가급여(제50조) 등 보험급여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함
 - －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급여 여부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4) 2020~2022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1%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